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힘내라 대한민국
		배포일시	2020. 6. 30.(화) 총 5매(본문3, 붙임2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기술기준과	·과장 박명주, 사무관 강지연, 주무관 성명수 ·☎ (044) 201-3570, 3571	
	건설기술연구원	공사비원가관리센터	·센터장 박태일, 팀장 안방율, 박사 오재훈, 전임 송태석 ·☎ (031) 910-0230, 0423	
보 도 일 시		2020년 7월 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6. 30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

- 일부 안전관리비용을 건설공사비에 반영… 안전관리비 추가확보
- 환경부·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 통해 방치된 폐기물 산정기준 정립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**건설현장 근로자**의 **안전**을 지키는데 필요한 **비용**을 추가로 **확보**하고 **건설폐기물 산정기준**을 **정립**(正立)하기 위해 **'20년 7월 1일**부터 **건설공사 표준품셈***을 **일부 개정**하여 시행한다.

*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·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·재료량,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 한 자료

○ 국토교통부는 **사안**의 **시급성**을 **감안**,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원장 한승헌)과 **안전비용·폐기물 산정기준**을 **조속히 마련**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(연1회)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**'20년 하반기**에 **추가 공고**하는 **방안**을 **마련**하였고 **개정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-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하여 낙하물방지망 등 **7개 항목**은 **신설**하고 플라잉넷 등 **3개 항목**은 **개정**하였으며, **폐기물 산정기준**은 **현실화**

구 분	대상 항목수	개정항목		
		구분	안전관리비	폐기물처리
공통	11	신설	7	-
		보완	3	1

* (**안전관리비**) 안전관리 인력, 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, 비계, 시스템 방호, 수직형 추락방망), 안전 난간(발코니, 슬래브, 계단), 엘리베이터(난간틀, 추락방호망),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

□ **(안전비용)**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「**건설 안전 혁신방안**」 발표('20.4)에 맞춰 **안전관리 인력**을 **추가**로 **배치**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(이하, 안전관리비)로 집행되는 **안전시설**(추락방지망·안전난간 등), **안전관리 인력**(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, 화재감시자)의 **내역반영 기준**을 **마련**하였다.

○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**공사내역**에 **직접 반영**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**관계부처**와 **지속적으로 협의**해왔다.

○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%의 **더 많은 안전비용**을 **확보**하여 추락·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·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되어 **건설현장**이 더욱 **안전한 일터**로 **자리매김**할 것으로 **기대**된다.

□ **(폐기물 처리)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**을 **제시**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하였고, **폐기물 분류**를 기존보다 **세분화***(3종→6종)하여 분별·해체제도 시행('21.4, 환경부)에 맞춰 상당 부분 **비용 산정**을 **현실화**하였다.

* (**기존, 3종**) 콘크리트류, 금속 및 철재류, 혼합폐기물(~'17) → (**개정, 6종**) 폐콘크리트, 폐금속류, 폐보드류, 폐목재류, 폐합성수지류, 혼합폐기물

○ **건설공사 현장**에서 발생되는 **폐기물**은 **현장실측** 또는 **설계도서**를 토대로 **예상발생량**을 **산출**하여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, 현장에 따라 **발생원인·종류·발생량**이 **달라** 정확한 **예측**이 **곤란**하여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.

○ 이에 환경부,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하였고, 내년 4월부터 의무화(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)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하여 **용도·구조·유형별**로 **발생량 기준**을 **신설**하여 제시하였다.

□ **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**은 “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**근로자 안전 확보**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, **발주처나 도급사**의 **폐기물 처리비용 산정**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**기대**된다” 고 말했다.

○ 공고된 ‘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’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 정보마당/훈령,예규,고시)에서 열람이 가능하다.

붙임 :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 1부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강지연 사무관(☎ 044-201-35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**

구 분	주 요 내 용
안전관리	◆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○ 유도자/신호자, 화재감시자와 같이 관련 규정에서 의무 배치 인원이 명시된 경우 품셈에 공사비 계상근거 마련 - 표준품셈 “1-7-7 산업안전보건관리비” 항목 내 계상근거 제시 * 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,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.” ◆ 안전시설물 ○ 현행 표준품셈 “2-8 방호시설”에서 제시하는 항목(플라잉넷, 비계) 외 안전시설물에 대한 품 기준 신설(**7개 신설**, 2개 보완) - 낙하물 방지망(시스템방호)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또는 낙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조물 외부에 임시로 설치 - 수직형 추락방망 발코니 등 개구부 구간의 추락 방지를 위해 전면을 수직형 그물망으로 견고하게 시공 - 안전난간대/계단난간대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개구부 주변 또는 계단 등의 장소에 임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- 엘리베이터 난간틀/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고층구조물 엘리베이터 구간에 근로자의 추락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안전시설 -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타워크레인 주변에 근로자 등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안전시설(방호울타리)

구 분	주 요 내 용
폐기물	◆ 환경관리비 ○ 건축물 부위별·성상별 폐기물의 단위면적당 발생량을 제시하여 설계자가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·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- 기존('17년 표준품셈) 대비 폐기물 종류의 구분을 3개(콘크리트류, 금속 및 철재류, 혼합폐기물)에서 6개(폐콘크리트, 폐금속류, 폐보드류, 폐목재류, 폐합성수지류, 혼합폐기물)로 확대 제시

(원단위 폐기물 발생량)

구 분			폐콘크리트류	폐금속류	폐보드류	폐목재류	폐합성수지류	혼합폐기물	총 계
신축	주거용	단독주택	0.03200	-	0.00051	0.00300	0.00174	0.00653	0.04378
		아파트	0.03561	-	0.00066	0.00416	0.00233	0.00874	0.05150
	비주거용	철근콘크리트조	0.04888	-	0.00117	0.00141	0.00445	0.00664	0.06255
		철골조	0.02920	-	0.00117	0.00071	0.00167	0.00353	0.03628
		철골철근콘크리트조	0.04087	-	0.00117	0.00128	0.00167	0.00418	0.04917
해체	주거용	단독주택	1.3321	0.0010	-	0.0968	0.0263	0.2030	1.6792
		아파트	1.4770	0.0655	-	0.0150	0.0261	0.1637	1.7993
	비주거용	철근콘크리트조	1.4028	0.0170	-	0.0638	0.0215	0.1348	1.6959
		철골조	0.9167	0.0550	-	0.0194	0.0261	0.1348	1.1624
		철골철근콘크리트조	1.5861	0.1220	-	0.0018	0.0245	0.1452	1.8796